#### 大田教員硏修院設置 및 運營條例案

提出年月日: 1993. 1. .

提 出 者:大田直轄市教育監

####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教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職員의 資質涵養과 創意的인 職務 能力을 培養하여 教育發展에 기여하고자 大田教員硏修院(이하 "硏修院"이라 한다) 을 設置하고 이에 따른 諸般事項을 정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 가. 設置目的을 정함(案 제1조)
- 나. 位置를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61-2번지로 정함(案 제2조)
- 다. 硏修院의 業務에 관한 사항을 정함(案 제3조)
  - (1) 敎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職員의 硏修
  - (2) 기타 敎育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硏修
- 라. 組織 및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사항(案 제4조 내지 案 제6조)
  - (1) 硏修院에 院長을 두되 奬學官으로 보함
  - (2) 院長밑에 3部를 둠
  - (3) 硏修院의 事務分業과 定員에 관한 사항은 敎育規則으로 정하도록 함
- 마. 硏修院의 施設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案 제8조)
- 바. 硏修院에 圖書室등 부속시설을 設置·運營할 수 있도록 함(案 제9조)
- 사. 條例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敎育規則으로 정하도록 함(案 제10조)

#### 3. 參考事項

- 가. 關聯法令: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제41조
- 나. 大田敎員硏修院設立計劃 同議案 議決 結果通報 공문사본: 별첨
- 다. 敎育機關 設置 承認 公文寫本 : 별첨

#### 대전교원연수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대전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직할시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위치) 연수원은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61-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육 · 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수
- 2. 기타 대전직할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4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원장의 통할하에 총무부 · 연수부 및 운영부를 둔다.

- ②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수부장 · 운영부장 · 총무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연수원의 사무분장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의 정원)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정) 연수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및 연수생 위탁기 관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비용징수) ①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비·숙박비·간식 비·교재비등의 연수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경비의 징수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9조(부속시설) 연수원에는 도서실 등 부속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대전교육연수원연수경비징수한도액

(금액단위 : 원)

구	분 연	수 경 비	단 위	яJ	<u> </u>
식	ы	1,500€	1인 1식		
숙 박	<b>a</b> J	400원	1인 1일	,	
간 식	मो	500€	1인 1일		
교 재	я]	1,000€			

#### 參考法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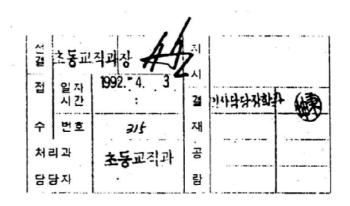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교육기관의 설치)

- ①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의 교육기관을 당해 시 $\cdot$ 도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 전 직 할 시

우 300-162 대전직할시 서구 도마2동 172-16 전화 522 - 4157 전송 522 - 4156

문서번호 행관 01601 **310** 시행일자 1992. 4. 3. ( )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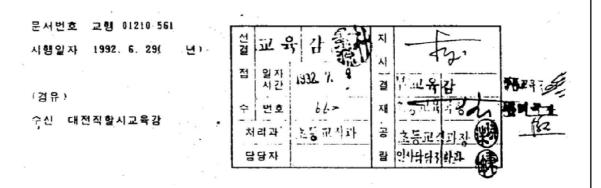
- 1.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 01601 86('92. 4. 1)와 관련입니다.
- 2. 제11회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의안이 이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가. 대전직할시교원연수원설립계획동의안 : 원안의결
  - 나. 대전학생교육설립계획동의안 : 원안의결. 끝.

형 정 관 리 담 당 3 ( )

수신처 본(6, 7)

#### 교 육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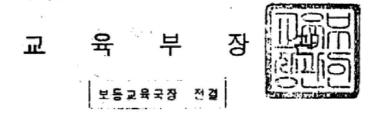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교육부 전화(729-2316) 전송(736-3402)



제목 : 교육기관 설치 승인

- 1. 초교 25130-338('92. 6. 8)호로 제출한 대전교원연수원 설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승인하며
- 2. 하부조직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설치조례안 작성시 우리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전교원연수원 설치 승인서 1부. "끝"



## 대전교원연수원설치승인서

구 분	승 인 내 용
0 목 적	교육 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질을
4	함양하고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3.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ㅇ 명 칭	대전교원연수원
ㅇ위치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 61-2
ㅇ 시설규모	부지 339,043㎡, 연건축면적 5,727㎡
ㅇ 개원예정일	'93 '37. 7월경

大田 教員 研修院 設置 및 運營 條例案

# 審査報告書

1993年 2月 日

文教・社會 委員會

大田 教員 研修院 設置 및 運營 條例案

## 審 査 報 告

1993. 2. 17. 文教社會委員會

### I. 審 査 經 過

1.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 2. 3 大田直轄市 教育監

2. 回 附 日 字:1993. 2. 3.

3. 上程日字:第18回 大田直轄市 議會(臨時會)

第 4次 文教社會 委員會 ('93. 2. 17)

上程,審查,議決

## Ⅱ. 提案說明 要旨(提案說明:初等教育局長)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 教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職員의 資質 涵養과 創意的인 職務能力을 培養하여 教育發展에 기여하고자

大田敎員硏修院(이하 "硏修院" 이라 한다)을 設置하고 이에 따른 諸般事項을 정하려는 것임.

- 2. 主要骨子
  - 가. 設置目的을 정함(案 第 1條)
  - 나. 位置를 충청남도 공주군 반포면 봉곡리 산 61-2번지로 정함 (案 第 2條)

- 다. 硏修院의 業務에 관한 사항을 정함(案 第 3條)
  - (1) 敎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職員의 硏修
  - (2) 기타 敎育監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硏修
- 라. 組織 및 公務員의 定員에 관한 사항(案 第4條 내지 案 第6條)
  - (1) 硏修院에 院長을 두되 奬學官으로 보함
  - (2) 院長밑에 3部를 둠
  - (3) 硏修院의 事務分業과 定員에 관한 사항은 敎育規則으로 정하도록 함
- 마. 硏修院의 施設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案 第 8條)
- 바. 硏修院에 圖書室등 부속시설을 設置·運營할 수 있도록 함 (案 第 9條)
- 사. 條例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敎育規則으로 정하도록 함 (案 第 10條)

####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金鎭鎬)

o 이 條例 制定案은 '89年 直轄市 昇格以後 全國 유일하게 우리 市만 敎員硏修院이 設置되어 있지않아 他市・道에 委託敎育을

實施 하는등 많은 불편과 애로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敎員 硏修院을 設置하고 이의 운영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하는 內容입니다.

o 本 條例案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첫째, 本 敎員 硏修院의 設置目的과 位置를 案 第1,2條에서 規定 하고 있는바 位置를 公州郡 反浦面 鳳谷里 산 61-2番地로 하여 기 設置된 大田學生 敎育院과 同一地域에 設置하므로써 부지확보에 따른 豫算節減效果는 물론 일부시설의 연계운영으로 인력절감의 효과에도 기여토록 하고 있음.

둘째, 本 硏修院의 業務에관한 事項으로서 地方自治法 第112條 에 規定된 敎育·學藝에관한 業務를 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

는 직원의 硏修 또는 大田直轄市 敎育監이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事項에 대한 硏修를 담당토록 하고있음.

셋째, 本 硏修院의 조직과 정원에관한 事項을 案 第 4, 5, 6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바, 本 硏修院의 院長은 장학관으로 보하며, 원장산하에 총무부, 연수부, 운영부를 두도록 하고있음.

넷째, 本 硏修院의 財政 運營에 관한 事項을 案 第 7, 8條에서 規定하고 있는바 本 硏修院의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는 敎育費

特別會計및 研修生 委託機關의 負擔金으로 충당토록 함으로써 硏修生으로부터 施設사용에 대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상에서 報告드린 바와 같이 本 條例案은 敎育·學藝에 관한 기관에 勤務하는 職員들에 대하여 精神敎育, 資格硏修, 職務敎

育등을 實施함으로써 이들의 자질을 涵養하고 職務能力을 培養하여 敎育發展에 기여키 위하여 大田敎員硏修院을 設置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事項등을 規定키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問 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 Ⅳ. 討 論 要 旨:省 略

- V. 質疑 및 答辯要旨:省 略
- Ⅵ. 審 査 結 果: 원안대로 가결
- WII.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